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33
------	-----

2023.04.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이민옥 의원(찬성자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4.25.)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옥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시장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운영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의됨.

나.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이하 ‘작성기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23년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는 293개 사업에 3조 8,937억원임.¹⁾

<2023년 서울시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대 상 사 업	회계별	사업수	예산액
		총계	293	3,893,721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소계	47	805,244
		일반회계	44	780,055
		기타 특별회계	2	24,339
		기금	1	85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 평가대상 예산사업 	소계	120	871,173
		일반회계	103	623,687
		기타 특별회계	16	247,406
		기금	1	8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 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소계	126	2,217,304
		일반회계	119	2,204,721
		기타 특별회계	4	12,286
		기금	3	297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신설(안 제5조)

-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하여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1) 전년 대비 30개 사업 감소했으나, 예산은 655억원 증가함.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 ▶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함.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은 선정기준과 절차가 상이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적용대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입법효과가 있음.
- 다만,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분류유형에 부합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성기준’과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신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u></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p> <p>1. <u>「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u></p> <p>2. <u>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u></p> <p>3. <u>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u></p> <p>4. <u>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u></p> <p>5. <u>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u></p> <p>6. <u>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p> <p>1. <u>「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u></p> <p>2. <u>「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u></p> <p>3. <u>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u> <u>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u> <u>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u> <u>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u></p> <p>4. ~ 6. (삭제)</p>

(2) 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개선(안 제8조)

- 개정안은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협의체의 양성

평등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재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는 총 13명(당연직 4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은 5명이고, 남성은 4명임.
-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시·도위원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과 조례의 위원 성별 비중을 일치시켜 조례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 달리 성별 비율의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u>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등에 맞춰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요건의 성별 비율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5조 각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분류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찬성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33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등에 맞춰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요건의 성별 비율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5조 각 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분류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대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 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안 제5조 본문을 제외한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p>
<u><신 설></u>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p> <p>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p> <p>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p> <p>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p> <p>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립사업</p> <p>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p> <p>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p> <p>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p> <p>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p> <p>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대상 예산사업</p> <p>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 사업</p> <p>나. 성별 격차 가능성이 큰 사업</p> <p>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p> <p>4. ~ 6. (삭제)</p>

<p>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 ----- -----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역성평등지수</u>”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u>지수화된 값을 말한다.</u></p> <p>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u>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u></p> <p>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p> <p>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p> <p>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사업 운영에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p>
<p>제5조 ~ 제7조(생략)</p> <p>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u>구성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p> <p>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u>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